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820 |
|----------|-----|

2024년 3월 7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5. 30. 최민규 의원 외 48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3. 6. 5.

다.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4년 3월 7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위해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의하고 있음.
- 최근 대한민국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공무국외활동 대상지도 확대되고 있으나 위원 정수의 한계로 인해 지역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서 실제 심사시에 공무국외활동 방문목적 및 대상지별 전문가를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심사위원의 자격을 개선하고 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안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4항, 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6. 8. ~ 2023. 6.12.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보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의회 공무국외활동 대상지 확대에 따라 방문목적과 대상지별 전문가를 각각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심사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2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현황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 행사 참여, 상호 결연도시 방문 및 초청,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등 의원이 공무국외활동을 함에 있어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조례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 출장 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친 후에는 이에 대한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
- 이때 심사위원회(총 9명)는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연직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1명과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인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인 4명으로 구성됨.
- 심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국외활동 목적과 방문 국가·기관의 적절성, ▶국외활동 인원수와 구성의 적합성,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국외활동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공무국외활동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 정도 등의 항목을 별표 공무국외활동 심사 기준(17개)을 적용해 심사하고 있음.

- 현재 심사위원회는 2022년 9월에 최초 위촉된 위원들이 한 차례 연임 (23.9.28~24.9.27.)돼 총 9회 개최되었으며, 국제교류 기본계획 및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 총 19건을 심사하였음.

3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비상설화(안 제6조)

- 개정안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현행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에 방문목적 및 대상지 전문가 각각 1명을 반드시 포함(안 제6조제1항)하고, 상설위원회인 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회의 종료시 자동 해촉(안 제6조제4항)’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p> <p>1.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p> <p>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p> <p>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p> | <p>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p> <p>-----</p> <p>-----</p> <p>-----</p> <p>-----</p> <p>-----</p> <p>-----</p> <p>1. 의회 운영위원장</p> <p>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 4명(다만, 해당 공무국외활동 방문목적 및 대상지별 전문가 각각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p> <p>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4명</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 ③ (생략)</p> <p>④ <u>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⑤ <u>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u></p> <p>⑥ (생략)</p> |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가 완료될 때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u></p> <p><삭 제></p> <p>⑥(현행과 같음)</p> |

-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 속에서 지방차원의 공공외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서울시의회의 상호결연도시를 포함한 국제교류도 확대 추세에 있음.

<서울시의회 상호결연도시 현황>

| 연번 | 도시명 | 국가명 | 체결일 | 연번 | 도시명 | 국가명 | 체결일 |
|----|---------|-------|------------|----|-----------|--------|------------|
| 1 | 뉴사우스웨일즈 | 호주 | '96.8.28. | 9 | 상파울로브라질 | 브라질 | '11.5.23. |
| 2 | 멕시코시티 | 멕시코 | '97.4.16. | 10 | 알마티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 '05.5.5. |
| 3 | 앙카라 | 터키 | '97.7.23. | 11 | 저장성 | 중국 | '01.3.30. |
| 4 | 바르샤바 | 폴란드 | '97.7.29. | 12 | 비슈켄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 '16.1.14. |
| 5 | 모스크바 | 러시아 | '97.4.1. | 13 | 웰링턴 | 뉴질랜드 | '18.1.18. |
| 6 | 울란바타르 | 몽골 | '97.8.27. | 14 | 베이징 | 중국 | '22.9.19. |
| 7 | 누르술탄 | 카자흐스탄 | '05.5.5. | 15 | 호놀룰루 | 미국 | '23.10.11. |
| 8 | 방콕 | 태국 | '07.11.26. | 16 | 하노이 | 베트남 | '23.12.18. |

- 그러나 현행 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 정수 8명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방문 목적과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해 심사 시 공무국외활동 방문목적 및 대상지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연수와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스스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과 이미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심사위원회의 비상설화로 각 목적별, 지역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과 각 상임위별 결과보고서 등의 연계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며,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¹⁾됨.
- 또한, 개정안은 기존 위촉위원들의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아, 종전 위원의 임기 및 구성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아울러,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서울시도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만을 비상설로 정비해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비상설기구 전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심사위원을 풀(Pool)제로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정안 취지에 맞는 비상설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 전문성 강화 등을 고려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1) 의회사무처의견 : 지역 또는 분야별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와 자문의견서 제출 의무화로 중복 심사가 우려되고, 위원회의 책임성과 운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위원회 구성 현행 체계 유지.**

4 종합 의견

- 개정안은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안전 발생 시에만 주체·지역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 다만,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할 것인지 비상설로 운영할 것인지는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심사위원의 위촉 범위의 확대, 다양한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위촉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면서도, 심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 연속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담당 연락처

02-2180-7688

참고1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서울시의회)

[별표]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제7조 관련)

| 항목 | 심사기준 | 예 | 아니오 |
|-------------------------------|---|---|-----|
|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 1. 공무국외활동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 | |
| |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활동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 | |
| |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활동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 | |
| | 4. 평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 | 2.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활동 여부 및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 | |
|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1. 국외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 | | |
| | 3. 국외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 1. 국외활동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 | |
| | 2.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 | |
| | 3.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 | |
|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 1.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2.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 | |
| 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 | (비교시찰의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 | |
|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 활용성 | 1.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활동 내용을 활동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 | |
| | 2. 공무국외활동 결과 및 노하우를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 | | |

참고2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개요 및 현황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심사기준), 제8조(회의) 등

○ 주요기능 :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및 자문 등

○ 임 기 : '23. 9. 28. ~ '24. 9. 27.

-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 위촉일로부터 1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구 성 : 위원 9명 (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 (의회) 시의회 운영위원장
- (민간)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
교육계 · 법조계 · 언론계 ·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4명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선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방 법 : 의장 추천

▶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목표 5(성평등, 여성의 참여 보장)

▶ 장애인 최소 1명, 청년 비율 15% 이상 노력

- ※ 청년 : (청년기본법) 만 19~34세 이하

○ 추진일정 :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필요시 수시 개최

제11대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명단

□ 임기 및 구성 : '23.9.28.~'24.9.27. / 9명(운영위원장1, 민간 전문가 8)

| 연번 | 직위 | 현 직 | 주요 학력 및 경력 |
|----|-------------|------------------------|--|
| 1 | 위원장 | · 애플에너지(주) 대표이사 |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수료 · (전)김영삼 정부 민정비서실 |
| 2 | 부위원장 | · 로코코 대표 | ·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졸업(석사) · 서울경제인협회 고문 |
| 3 | 위원 | ·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 상임고문 |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전)국회의장실 정무비서관 |
| 4 | 위원 (당연직) |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장 |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의원 · 제7대, 8대 도봉구의회의원 |
| 5 | 위원 | · 스카이코드 대표 | · 극동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 재학 중 · 서울경제인협회 홍보본부 위원 |
| 6 | 위원 | ·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 ·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졸업(박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총동창회장 |
| 7 | 위원 | · (사)서울미래교육연구원 이사장 |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전)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 8 | 위원 | · 동양대학교 철도건설 안전공학과 부교수 | ·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석사) ·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박사) · (전)국가건설기준센터 철도위원장 |
| 9 | 위원 | · 서정대학교 호텔항공 관광학부 조교수 |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졸업(박사) · (전)우송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외래교수 |

제11대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활동 실적

□ 활동실적 : 9회 개최, 19건 심사

| 연번 | 개최일시 (장소) | 참석위원 | 안건 | 심의결과 |
|----|--|---|--|--------------------------|
| 1 | 2023.12.27.(수) 16:00~17:40 (본관 제1회의실) | 박정환, 백순복, 김정열, 이은희, 이준순, 진진희 | ○ 2024년 국제교류 기본계획 ○ 2023년 비교시찰 활동보고서 6건 - 행사·환수·문체·주공·도계·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2 | 2023.6.16.(금) 15:00~17:00 (본관 제2회의실) | 박정환, 김정열, 백순복, 이은희, 이준순, 진진희 | ○ 행정자치위원회 싱가포르, 홍콩 비교시찰 - '23.7.9.~7.15.(6박7일) ○ 203년 비교시찰 활동보고서 4건 - 기경·보복·도안·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3 | 2023.4.26.(수) 14:00~16:00 (본관 제1회의실) | 박정환, 김정열, 이도경, 이은희, 이준순 | ○ 교통위원회 스웨덴, 핀란드 비교시찰 - '23.5.18.~5.25.(5박8일) ○ 주택공간위원회 스페인 비교시찰 - '23.5.21.~5.29.(7박9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호주 비교시찰 - '23.5.22.~5.28.(5박7일) | 원안가결2 수정가결1 (주택공간) |
| 4 | 2023.4.11.(화) 13:30~15:50 (본관 제1회의실) | 박정환 위원장 등 6명 (박정환, 백순복, 김정열, 박환희, 이도경, 이은희) | ○ 기획경제위원회 스위스, 이탈리아 비교시찰 - '23.5.9.~5.18.(8박10일) ○ 환경수자위원회 스페인, 포르투갈 비교시찰 - '23.5.9.~5.17.(7박9일)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호주 비교시찰 - '23.5.9.~5.16.(6박8일) | 원안가결2 수정가결1 (기획경제) |
| 5 | 2023.2.22.(수) 14:00~16:20 (의원회관 7-2회의실) | 박정환 위원장 등 7명 (박정환, 백순복, 김정열, 박환희, 이도경, 이준순, 진진희) |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일본 비교시찰 - '23.3.14.~3.21.(7박8일) ○ 보건복지위원회 호주, 뉴질랜드 비교시찰 - '23.3.16.~3.23.(6박8일) ○ 교육위원회 호주 비교시찰 - '23.3.21.~3.28.(6박8일) | 원안가결 |
| 6 | 2022.12.7.(수) 16:00~17:45 (본관 제1회의실) | 박정환 위원장 등 7명 (박정환, 백순복, 이준순, 이도경, 이은희, 정형상, 진진희) | ○ 주택공간위원회 일본 비교시찰 - '22.12.25.~12.28.(3박4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본 비교시찰 - '22.12.16.~12.29.(3박4일) | 원안가결 |
| 7 | 2022.11.1.(화) 16:30~17:30 (본관 제2회의실) | 박정환 위원장 등 6명 (박정환, 백순복, 김정열, 박환희, 이은희, 이준순) | ○ 심미경 의원 대만 공무국외활동 - '22.11.11.~11.13.(2박3일) | 원안가결 |
| 8 | 2022.10.14.(금) ~10.18.(화) (서면) | 박정환 위원장 등 9명 (박정환, 백순복, 김정열, 박환희, 이도경, 이은희, 이준순, 정형상, 진진희) | ○ 기획경제위원회 호주 비교시찰 - '22.10.18.~10.24.(5박7일) | 원안가결 |
| 9 | 2022.9.19.(월) 16:00~18:00 (의장접견실) | 박정환 위원장 등 8명 (박정환, 백순복, 김정열, 박환희, 이도경, 이은희, 이준순, 진진희) | ○ 위원 위촉식 ○ 위원장(박정환) 및 부위원장(백순복) 호선 ○ 교통위원회 아랍에미리트 비교시찰 - '22.10.13.~10.18.(5박 6일) ○ 기획경제위원회 호주 비교시찰 - '22.10.18.~10.26.(7박9일) | 원안가결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등의 심사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탄력적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심사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함.

나. 수정의 주요내용

-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전문가 4명을 20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2호).
- 심사위원회의 정수를 9명에서 25명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3항).
- 심사위원회 비상설 운영과 임기 관련 규정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설위원회로 두고, 임기 등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 심사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기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0명, 찬성 10명)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820 |
|----------|-----------|

제안년월일 : 2024년 3월 7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등의 심사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탄력적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심사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전문가 4명을 20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2호).
- 심사위원회의 정수를 9명에서 25명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3항).
- 심사위원회 비상설 운영과 임기 관련 규정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설위원회로 두고, 임기 등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 심사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과 시행일 등을 조정함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원안과 같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 20명

안 제6조제3항 중 “9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회를 구성한다.

안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p>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p> <p><u>1.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u></p> <p><u>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u></p> <p><u>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u></p> <p>② (생략)</p> <p>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 <p>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 ----- ----- ----- ----- ----- ----- ----- ----- ----- --.</p> <p><u>1. 의회 운영위원장</u></p> <p><u>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 4명(다만, 해당 공무국외활동 방문목적 및 대상지별 전문가 각각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u></p> <p><u>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4명</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p>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p> <p><u>1. 의회 운영위원장</u></p> <p><u>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 20명</u></p> <p><u>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4명</u></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 -----25명----- ----- -----.</p> |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p><u>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⑤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u></p> <p>⑥ (생략)</p> <p>제8조(회의) ① (생략)</p> <p><u>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流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u></p> | <p><u>④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12조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가 완료될 때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u></p> <p><u><삭 제></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 <p><u>④ (현행과 같음)</u></p> <p><u>⑤ (현행과 같음)</u></p> <p>⑥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회의) ① (개정안과 같음)</p> <p><u>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p>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명”을 “25명”으로 한다.

1. 의회 운영위원장
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 20명
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4명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p> <p style="margin-left: 20px;">1.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p> <p style="margin-left: 20px;">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p> <p style="margin-left: 20px;">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p> <p>② (생략)</p> <p>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⑥ (생략)</p> <p>제8조(회의) ①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流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p> | <p>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 ----- ----- ----- -----.</p> <p style="margin-left: 20px;">1. 의회 운영위원장</p> <p style="margin-left: 20px;">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20명</p> <p style="margin-left: 20px;">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4명</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25명----- ----- -----.</p> <p>④~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